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수신자 : 대한의사협회장
(경유)
제 목 : 2024년(7차)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변경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제63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, 제22조의2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35호(2023.2.24.) "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"

다. 평가2부-417호(2023.10.26) "2022년(5차)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4년(7차) 세부시행계획 안내"

3. '23.10월 보고한 '24년(7차)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과 관련하여, 결핵 진료지침(5판)이 개정('24. 1.)됨에 따라 제외기준을 반영하여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기존(7차)	변경
· 대상환자: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(건강보험, 의료급여, 보훈) ※ 제외환자: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환자	· 대상환자: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(건강보험, 의료급여, 보훈) ※ 제외환자: **광범위약제내성결핵, 광범위약제내성 전단계 결핵, 다제내성결핵, 리팜핀내성결핵 환자**

※ 세부내용은 '붙임' 참조

4. 아울러, 본 시행계획은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누리집(www.hira.or.kr) > 알림 > 공지사항

붙임 2024년(7차)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. 끝.

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

결재	담당 **박훈영**	팀장 **문주옥**	부장 **유희영**	실장	전결05/19 **전미주**

협조

시행 만성질환평가부-357 (2025.05.19.) 접수

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(반곡동) / www.hira.or.kr

전화 033-739-4574 전송 033-811-7423 /moonjuok@hira.or.kr

/ 비공개(5)